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문개정	1999. 1. 7	조례 제1114호	일부개정	2013. 12. 12	조례 제1978호		
	개정	1999. 6. 29	조례 제1139호	일부개정	2014. 2. 27	조례 제1992호	
		1999. 9. 10	조례 제1147호	일부개정	2014. 8. 14	조례 제2005호	
		2001. 7. 26	조례 제1255호	일부개정	2015. 4. 3	조례 제2074호	
		2002. 2. 16	조례 제1272호	일부개정	2015. 5. 28	조례 제2086호	
		2003. 2. 11	조례 제1297호	일부개정	2015. 9. 30	조례 제2113호	
		2003. 10. 9	조례 제1316호	일부개정	2016. 1. 1	조례 제2155호	
	(제2의건국법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		일부개정	2016. 3. 2	조례 제2164호		
전문개정	2003. 11. 18	조례 제1323호	일부개정	2016. 9. 26	조례 제2193호		
	개정	2004. 1. 8	조례 제1332호	일부개정	2016. 12. 20	조례 제2221호	
		(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2017. 3. 12	조례 제2241호	
		2004. 6. 25	조례 제1344호	일부개정	2017. 7. 24	조례 제2270호	
		2004. 9. 21	조례 제1358호	일부개정	2017. 11. 10	조례 제2310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2018. 1. 31	조례 제2336호	
	2004. 11. 20	조례 제1359호	일부개정	2018. 4. 25	조례 제2361호		
	2005. 4. 21	조례 제1379호	전부개정	2018. 8. 30	조례 제2403호		
	2005. 7. 27	조례 제1396호	일부개정	2019. 8. 2	조례 제2510호		
	2005. 12. 22	조례 제1420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06. 10. 20	조례 제1463호	일부개정	2019. 12. 20	조례 제2560호		
	2006. 12. 15	조례 제1480호	일부개정	2020. 3. 25	조례 제2591호		
	전문개정	2007. 3. 28	조례 제1500호	일부개정	2020. 12. 22	조례 제2699호	
		개정	2008. 6. 16	조례 제1586호	일부개정	2021. 6. 10	조례 제2749호
			2008. 6. 16	조례 제1588호	일부개정	2021. 9. 28	조례 제277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22. 3. 2	조례 제2843호	
2008. 9. 24		조례 제1608호	일부개정	2022. 8. 2	조례 제2873호		
2008. 12. 9		조례 제1630호	일부개정	2022. 12. 26	조례 제2914호		
2009. 5. 29		조례 제1665호	일부개정	2023. 9. 25	조례 제2999호		
전부개정		2010. 11. 25	조례 제1731호	전부개정	2024. 7. 4	조례 제3116호	
일부개정	2011. 3. 8	조례 제1759호	일부개정	2024. 11. 12	조례 제3164호		
일부개정	2011. 9. 22	조례 제1798호	일부개정	2024. 12. 23	조례 제3193호		
일부개정	2011. 12. 26	조례 제1815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광명시 무형 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2012. 8. 8	조례 제1862호	일부개정	2025. 10. 2	조례 제3289호		
일부개정	2013. 2. 25	조례 제1907호	일부개정	2026. 4. 17	조례 제3382호		
일부개정	2013. 8. 1	조례 제1933호	전부개정	2026. 8. 5	조례 제3402호		
일부개정	2013. 11. 1	조례 제197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광명시 본청과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행정기구 설치, 직무범위 및 광명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한다.

1. 직속기관: 보건소
2. 사업소: 평생학습사업본부, 친환경사업본부
3. 하부행정기관: 광명1동, 광명2동, 광명3동, 광명4동, 광명5동, 광명6동, 광명7동, 철산1동, 철산2동, 철산3동, 철산4동, 하안1동, 하안2동, 하안3동, 하안4동, 소하1동, 소하2동, 일직동, 학운동

제3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①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실·국장, 직속기관·사업소의 장과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담당관·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세부적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소재지) 시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2장 본청

제5조(부시장) ① 시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시장 아래에 부시장을 둔다.

② 부시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소속 공무원의 지휘·감독
3. 국회 및 시의회와 관련된 각종 협의에 관한 사항
4. 정부, 경기도 등 유관기관과 관련되는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보좌기관) ① 시장 아래에 시민소통관을 둔다.

② 부시장 아래에 청년정책관, 홍보기획관, 감사담당관을 둔다.

제7조(실·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행정안전국, 경제문화국, 교통국, 돌봄복지국, 도시주택국, 균형발전국을 둔다.

제8조(기획조정실에 두는 과) ①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과, 탄소중립과, 예산법무과, AI전략과, 정보통신과를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의 종합기획·조정, 정책개발, 정책과제, 대외협력, 의회 협력 및 조직에 관한 사항
2.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정책, 탄소중립·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편성·운영, 재정분석, 경영·성과평가, 국도비 관리, 법제 및 소송,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AI), 스마트도시, 데이터, 공간정보 및 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행정정보, 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행정안전국에 두는 과) ① 행정안전국에 총무과, 안전총괄과, 자치분권과, 회계과, 세정과, 민원토지과를 둔다.

② 행정안전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치행정, 복무관리, 선거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2. 인사행정, 공무원 교육훈련·후생복지 및 비정규직 운영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 총괄·조정, 사회·자연재난 및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4. 재난상황 관리, 민방위 및 국가 비상사태에 관한 사항
5. 자치분권, 주민자치, 민관협치 및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6. 회계지출·결산, 계약, 재산관리, 청사관리 및 공공청사건립에 관한 사항
7. 지방세 부과·징수, 세외수입, 세무조사 및 체납 관리에 관한 사항
8. 종합민원, 가족관계등록, 여권 발급, 토지관리, 부동산, 지적 및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

제10조(경제문화국에 두는 과) ① 경제문화국에 일자리경제과, 사회연대경제과, 투자

유치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도시농업과를 둔다.

② 경제문화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일자리정책, 일자리센터, 지역경제,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2. 사회연대경제 분야, 지역자산화, 사회적경제기업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3. 기업 지원, 투자유치, 산업단지 관리, 지식산업센터 및 노동권익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관광정책, 국가유산 관리 및 문화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5. 체육진흥, 생활체육, 체육시설 및 광명시민체육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6. 농업 지원, 도시농업 활성화, 농산물 유통, 친환경·공공급식, 축산행정 및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

제11조(교통국에 두는 과) ① 교통국에 철도정책과, 대중교통과, 도로시설과, 도로관리과, 차량관리과를 둔다.

② 교통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철도정책, 국가철도망 구축, 광역철도사업 및 연계 교통체계에 관한 사항
2. 교통정책, 스마트교통, 교통영향평가 및 광역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대중교통, 운수행정, 운수지도 및 자동차 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4. 주차시설, 주차장, 주정차 및 가로관리에 관한 사항
5. 도로정책, 도로 건설·정비, 도로시설, 지하안전관리 및 보행환경에 관한 사항
6. 자동차·건설기계 등 차량행정, 차량범죄 수사 등 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돌봄복지국에 두는 과) ① 돌봄복지국에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노인장애인과, 성평등가족과, 보육정책과를 둔다.

② 돌봄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정책, 복지서비스·자원관리, 복지시설 및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2. 사회보장 조사·급여 관리, 노인·장애인 복지 및 돌봄에 관한 사항
3. 통합돌봄, 자살예방정책 총괄 및 사례관리 연계에 관한 사항
4. 성평등정책, 저출생대응, 아동복지 및 외국인·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5. 보육정책, 영유아 보육지원, 어린이집 및 보육정보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

제13조(도시주택국에 두는 과) ① 도시주택국에 도시계획과, 주택과, 건축과, 정원도시과를 둔다.

② 도시주택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개발제한구역 관리, 도시디자인 및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
2. 주거정책, 공동주택관리 및 주택행정에 관한 사항
3. 공공건축기획, 건축행정·지도, 건축물 안전관리 및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정원·공원 정책, 정원도시 조성, 공원·녹지 관리 및 산림에 관한 사항

제14조(균형발전국에 두는 과) ① 균형발전국에 신도시조성과, 도시재생과, 균형개발과, 건설지원과를 둔다.

② 균형발전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신도시 개발, 공공주택지구 조성, 도시개발사업 총괄 및 특별관리지역 지정·개발에 관한 사항
2. 산업단지 및 테크노밸리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
3.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및 재정비촉진지구 관리에 관한 사항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사항
5. 건축 및 토목공사 등 시장이 정하는 공사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5조(설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지역보건법」 제10조·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1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두며, 보건소에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의료돌봄과, 감염병관리과를 둔다.

제16조(소장) 보건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7조(소관사무)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4장 사업소

제18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 아래에 평생학습사업본부, 친환경사업본부를 둔다.

② 평생학습사업본부에 평생학습원, 교육청소년과, 도서관정책과, 하안도서관, 광명도서관을 둔다.

③ 친환경사업본부에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수도과, 하수과, 정수과를 둔다.

제19조(사업소의 장) 사업소에 각각 본부장을 두며,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0조(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평생학습사업본부

가. 평생학습정책, 학교지원 및 청소년 정책에 관한 사항

나. 평생교육시행, 총괄·조정 및 평생학습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다. 도서관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도서자료 관리 및 도서관 자료의 보관, 열람·대출 등에 관한 사항

2. 친환경사업본부

가. 환경정책 기획, 보전 및 대기·수질 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나.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자원순환 및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상수도 행정 종합기획, 상수도 요금 부과·징수, 수돗물 생산·급수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상수도 관로 및 정수장·배수지·가압장의 보호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마. 하수도 행정 종합기획,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하수도 정비, 오수관리 및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바. 국가하천 정비 및 치수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장 하부 행정기관

제21조(설치)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동을 둔다.

제22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3조(직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민원서류 발급, 통·반 조직 운영, 주민생활지원, 사회복지, 시장으로부터 지시 또는 위임받은 업무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수행한다.

제24조(관할구역)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6장 지방공무원 정원

제25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363명으로 하며, 기관별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1,337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6명

제26조(정원채정 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7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6. 8. 5 조례 제3402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가목 중 “시민소통관, 홍보기획관”을 “시민소통관, 청년정책관, 홍보기획관”으로, “자치행정국”을 “행정안전국”으로, “평생학습사업본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을 “평생학습사업본부 소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안전건설교통국”을 “교통국”으로, “신도시개발국”을 “균형발전국”으로 한다.

② 광명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안전건설교통국장”을 “교통국장”으로 한다.

③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④ 광명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안전건설교통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⑤ 광명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⑥ 광명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안전건설교통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⑦ 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중 “안전건설교통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별표 1의 재난 업무 주관부서란의 “도시교통과/철도정책과”를 “철도정책과/대중교통과”로, “도로과”를 “도로시설과/도로관리과”로, “건강위생과”를 “보건위생과”로 한다.

별표 2의 총괄조정관란의 “안전건설교통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별표 6의 비고란의 “도시교통과/철도정책과”를 “철도정책과/대중교통과”로, “통합돌봄과”를 “복지정책과/통합돌봄과”로, “어르신복지과”를 “노인장애인과”로 한다.

별표 8의 비고란의 “도시교통과/철도정책과”를 “철도정책과/대중교통과”로, “통합돌봄과”를 “복지정책과/통합돌봄과”로, “어르신복지과”를 “노인장애인과”로 한다.

⑧ 광명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안전건설교통국장”을 “교통국장”으로 한다.

⑨ 광명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안전건설교통국장”을 “교통국장”으로 한다.

⑩ 광명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안전건설교통국장”을 “교통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도로과장”을 “도로시설과장”으로 한다.

⑪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안전건설교통국장”을 “교통국장”으로 한다.

⑫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항제1호 중 “안전건설교통국장”을 “교통국장”으로 한다.

⑬ 광명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광명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의 “안전건설교통국 안전총괄과”를 “교통국 도로시설과”로 한다.

⑭ 광명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안전건설교통국장”을 “교통국장”으로 한다.

⑮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신도시개발국장”을 “균형발전국장”으로, “도시개발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민원토지과장, 도시계획과장, 도시재생과장이”를 “민원토지과장, 도시계획과장이”로 한다.

⑯ 광명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차량등록사업소장”을 “차량관리과장”으로 한다.

⑰ 광명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어르신복지과장”을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한다.

⑱ 광명시 노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어르신복지과장”을 “노인장애인과장”으로,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정책팀장”을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장”으로 한다.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⑪ 광명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관부서란의 “어르신복지과”를 “노인장애인과”로 한다.

[별표 1]

시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소재지(제4조 관련)

기 관 명		소 재 지
본 청	광명시청	광명시 시청로 20
직속기관	광명시 보건소	광명시 오리로 613
사 업 소	광명시 평생학습사업본부	광명시 철망산로 2
	광명시 친환경사업본부	광명시 범안로 777-21
하 부 행정기관	광명시 광명1동 행정복지센터	광명시 광복로 51
	광명시 광명2동 행정복지센터	광명시 광명로 947
	광명시 광명3동 행정복지센터	광명시 광명로928번길 18-20
	광명시 광명4동 행정복지센터	광명시 오리로975번길 9-1
	광명시 광명5동 행정복지센터	광명시 너부대로35번길 20
	광명시 광명6동 행정복지센터	광명시 광명로791번길 6
	광명시 광명7동 행정복지센터	광명시 새터로 13
	광명시 철산1동 행정복지센터	광명시 사성로 121
	광명시 철산2동 행정복지센터	광명시 시청로 102
	광명시 철산3동 행정복지센터	광명시 철산로 56
	광명시 철산4동 행정복지센터	광명시 도덕공원로 60
	광명시 하안1동 행정복지센터	광명시 오리로 747
	광명시 하안2동 행정복지센터	광명시 안현로 25
	광명시 하안3동 행정복지센터	광명시 금당로 28
	광명시 하안4동 행정복지센터	광명시 안현로 54
	광명시 소하1동 행정복지센터	광명시 소하로 25
	광명시 소하2동 행정복지센터	광명시 성채로 52
	광명시 일직동 행정복지센터	광명시 양지로 17 (유플래넷 6층)
	광명시 학온동 행정복지센터	광명시 서독로104번길 14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제26조제1항 관련)

구 분	일 반 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99% 이상	1% 이내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제26조제2항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분	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비율	100%	1.1% 이내	6.8% 이내	23.9% 이내	33.5% 이내	24.8% 이내	9.7% 이상	0.2% 이하

2. 연구직 공무원

구분	연구직	
	연구관	연구사
비율	-	100%

3. 별정직 공무원

구분	5급 상당	6급 상당 이하
비율	50% 이내	50% 이상

※ 공통: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4]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제27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보건소	사업소	동
총 계	1,363	1,363				
정무직 계	1	1				
시장	1	1				
일반직 계	1,355	1,355				
3급	1	1				
4급	11	7	1	1	2	
5급	77	39	2	7	10	19
6급 이하	1,264	1,264				
전문경력관	2	2				
별정직 계	6	6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5	5				
연구직 계	1	1				
연구사	1	1				